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      |
|----------|------|
| 의안<br>번호 | 1899 |
|----------|------|

2017년 9월 6일  
행정자치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안자 : 김혜련 의원(찬성자 16명)
- 나. 제안일 : 2017년 6월 9일
- 다. 회부일 : 2017년 6월 13일
- 라. 상정일 : 제276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17년 8월 31일 상정·의결(수정안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김혜련 의원)

###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는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정책결정을 위한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 시 위촉직 위원 중 여성의 비율을 40%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원회 설치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한 본 조례에도 명시하여 줄 필요 있음.

### 나. 주요내용

- 시장 등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 중 여성의 비율을 40% 이상으로 하도록 함 (안 제8조제4항).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해당 없음.
-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비용추계 비대상).
- 다. 기타 : 입법예고(2017. 6. 16. ~ 6. 23) 결과 : 의견없음.

####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중 여성의 비율을 40%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안 제8조제4항 신설)하여 「양성평등 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의 근본 취지를 반영하고, 위원회의 위원 구성시에도 양성평등의 이념을 실현하려는 것임.

| 현 행                     | 개 정 안  |
|-------------------------|--|
|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③ (생략) |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
| <신 설>                   | ④ 시장 등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 중 여성의 비율을 4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 ④ ~ ⑥ (생략)              | ⑤ ~ ⑦ (현행 제4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   |

- 서울시에 189개의 위원회(2017년 7월 기준)가 있으며, 전년 대비 4개 위원회가 증가하였고, 2012년 이후 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위원회 현황〉

(단위 : 개)

| 구 분  | '09년말 | '10년말 | '11년말 | '12년말 | '13년말 | '14년말 | '15년말 | '16년말 | '17년<br>현재 |
|------|-------|-------|-------|-------|-------|-------|-------|-------|------------|
| 위원회수 | 116   | 113   | 103   | 127   | 136   | 148   | 152   | 185   | 189        |
| 증 감  | △6    | △3    | △10   | 24    | 9     | 12    | 4     | 33    | 4          |

- 서울시의 위촉직 위원 중 여성의 비율을 살펴보면, 2015년에는 1,204명(37.7%), 2016년에는 1,302명(38.6%)이었으며,

- 2017년 7월 기준으로 전체 위원회(189개)의 위촉위원은 총 3,688명 중 남성이 2,199명(59.6%), 여성이 1,489명(40.4%)으로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달성한 것으로 보이나, 개별 위원회별로 구성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189개 위원회 대비 70개 위원회(37%, 2017년7월 기준)는 여성비율 40%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위원회 구성〉

(단위 :개, 명, %)

| 연도          | 위원회 수 | 총 계   | 당연·임명직 | 위촉직 위원 |       |       | 비고               |
|-------------|-------|-------|--------|--------|-------|-------|------------------|
|             |       |       |        | 소계     | 남성    | 여성    |                  |
| 2017년<br>7월 | 189   | 4,270 | 582    | 3,688  | 2,199 | 1,489 | *<br>여성비율<br>40% |

| 연도   | 총 계   | 당연·<br>임명직 | 위 촉 직  |         |         |        |            |        |                  |                 | 위 촉 직   |        |
|------|-------|------------|--------|---------|---------|--------|------------|--------|------------------|-----------------|---------|--------|
|      |       |            | 소 계    | 학 계     | 전문가     | 민간기업   | 시민<br>사회단체 | 시의원    | 공공기관<br>(중앙부처 등) | 기 타<br>(일반시민 등) | 여성      | 장애인    |
| 2016 | 3,911 | 536        | 3,375  | 834     | 1,033   | 209    | 399        | 216    | 282              | 402             | 1,302   | 52     |
|      |       |            | (100%) | (24.7%) | (30.6%) | (6.2%) | (11.8%)    | (6.4%) | (8.4%)           | (11.9%)         | (38.6%) | (1.5%) |
| 2015 | 3,661 | 467        | 3,194  | 879     | 687     | 308    | 372        | 185    | 284              | 479             | 1,204   | 47     |
|      |       |            | (100%) | (27.5%) | (21.5%) | (9.6%) | (11.6%)    | (5.8%) | (8.9%)           | (15.0%)         | (37.7%) | (1.5%) |

- 안 제8조제4항은 위촉직 위원 중 여성의 비율을 40% 이상으로 규정 하려는 것으로, 위촉직 위원의 구성시에도 양성의 동등한 참여를 바탕으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데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르면,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를 예외 사유로 두고 있는바,

### 「양성평등기본법」

-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공표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기관의 연도별 임용목표비율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이하 이 조에서 "관리직 목표제"라 한다)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 ⑤ 공공기관의 장은 관리직 목표제 등을 시행하여야 하고, 해당 기관의 임원 임명시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여성위원의 비율을 40% 이상”으로 규정하는 것보다 상위법령의 내용을 반영하여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보다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또한, 「양성평등기본법」 제정(2015년 7월 1일 시행)시 부칙<sup>1)</sup>으로 동 조항 관련 특례 규정을 두어 2017년 12월 31일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바, 개정안에도 법과 같이 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과 구성을 위한 특례규정 또는 적용례 규정에 관한 부칙을 마련할 필요는 없는지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음.

1) 부칙 제2조(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 할당에 관한 특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1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개정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상위법령의 규정을 반영하여 일부 내용을 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안 제8조제4항).
-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함(안 부칙).

8. 심 사 결 과 : 수정안 가결(재석위원 8명, 전원찬성).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             |
|----------|-------------|
| 의안<br>번호 | 관 련<br>1899 |
|----------|-------------|

제안연월일 : 2017년 8월 31일  
제 안 자 : 행정자치위원장

## 1. 수정이유

- 개정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상위법령의 규정을 반영하여 일부 내용을 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안 제8조제4항).
-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함(안 부칙).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8조제4항 중 “여성의 비율을 4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수정안 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수 정 안   |
|---|---|---|
| 제8조(위원회의 구성)<br>① ~ ③ (생략)<br><신설><br><br>부칙<br>이 조례는 공포한 날<br>부터 시행한다. |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br>~ ③ (현행과 같음)<br>④ 시장 등은 정책결정<br>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br>을 설치·운영하는 경우<br>에는 위촉직 위원 중 <u>여성</u><br>의 비율을 40% 이상으로<br>하여야 한다.<br><br>부칙<br>이 조례는 <u>공포한 날</u> 부<br>터 시행한다. |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br>~ ③ (현행과 같음)<br>④ 시장 등은 정책결정을<br>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br>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br>위촉직 위원 중 <u>특정 성별</u><br>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br>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br>록 하여야 한다.<br>부칙<br>이 조례는 <u>2018년 1월 1</u><br>일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④ 시장 등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③ (생략)              |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
| <u>&lt;신 설&gt;</u><br><br>④ ~ ⑥ (생략) | ④ 시장 등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br>⑤ ~ ⑦ (현행 제4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 |